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national medical center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education & training center for public healthcare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자주 묻는 질문

본 자료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참여 시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과 매년 배포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목차

## 1. 장학생 신청

### 신청 자격

1. 휴학생이나 졸업생도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14
2. 현재 대학 4학년인데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14
3. 장학생 신청에 나이제한이 있나요? ..... 14
4. 재학 중 학교 사정으로 간호학과가 없어졌는데 제 학번까지는 정상적으로  
간호학과 졸업 처리 및 면허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14

### 제출 서류

5. 전적대학을 졸업/자퇴 후 현재 대학에 다시 신입생으로 입학 했습니다.  
성적증명서는 전적대학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등학교  
성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 15
6. 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로 타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학위를 바탕으로 이번 학기에 편입했는데, 성적증명서는 학점은행제  
성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졸업한 대학교 성적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 15
7. 장학생 신청 시 제출하는 성적증명서는 선발 이후 장학생 자격유지나  
의무복무지 배치 등에도 반영이 되나요? ..... 16
8. 지원서에 기재하는 성적은 직전 한 학기 성적 평균만 기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전 학기 까지의 성적 평균을 기재하는 건가요? ..... 16
9. 자기소개서 작성 시 사진, 표 등을 삽입해도 되나요? ..... 16
10. 신청서류 중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있어야 하나요? ..... 16
11. 신청서류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PDF가 아닌  
한글 파일 형태로 제출하나요? ..... 17

제출  
서류

- 12.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에 붙이는 증명사진의 별도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 17
- 13. 학교가 소재한 지역으로만 지원 가능한가요? ..... 17
- 14. '친구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되어 장학생 지원서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했는데, 학교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7
- 15. 장학생 지원서 등의 제출서류를 사도와 복지부로 제출할 때 우편을 통해 제출하나요? ..... 17

## 2. 장학생 선발 및 취소

선발

- 16. 지역별로 장학생을 모집하는 인원이 배정되어 있나요? ..... 18
- 17.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선발 경쟁률을 알 수 있을까요? ..... 18
- 18. 장학생 선발은 연 1회만 하나요? ..... 18
- 19.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환산 하나요? ..... 18
- 20. 면접 복장은 정해져 있나요? ..... 19
- 21. 면접 참석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가 지원되나요? ..... 19

포기 및  
취소

- 2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중도 포기 할 수 있나요? ..... 19

## 3. 장학금 교부 및 학사관리

### 장학금 지원목적

- 23. 장학금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 20
- 24. 장학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 20

### 장학금 지급 시기/방법

- 25. 이미 이번 학기 학비를 납부한 상황인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은 다음학기부터 받는건가요? ..... 21
- 26. 장학금은 졸업할 때 까지 지원 받는건가요? ..... 21
- 27. 장학금 수혜 중에 장학금 신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21
- 28. 장학금은 학교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되나요? ..... 22
- 29. 학비 납부 기간이 되었는데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22
- 30. 편입생이라서 현재 학적은 4학년이지만 실제 교과이수과정은 3학년이기 때문에 졸업까지 2년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남은 2년 동안 모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22
- 31. 장학금을 1년만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의무복무도 1년만 하면 되나요? ..... 22
- 32. 학점 부족으로 인해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 더 등록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23
- 33. 다른 장학금을 받고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장학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3
- 34. 장학금을 지원 받는 시도를 중도에 변경할 수 있나요? ..... 23

장학금  
정지/중단  
/반환

- 35. 장학금 수혜 중 휴학을 해도 장학금은 계속 지급 되나요? ..... 25
- 36. 재학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장학금이 계속 지급 되나요? ..... 25
- 37. 장학금을 받는 중에 전과를 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해도 장학금 수혜가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 25
- 38. 졸업 후 면허 시험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 26
- 39.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더해지는 법정이자율은 얼마인가요? ..... 26

학적·성적  
관리

- 40.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휴학/복학/전과/편입 등 학적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27
- 41. 학사관리 보고서에 신설된 성적 기준은 기존 장학생에게도 모두 적용되나요? ..... 27

## 4. 의무복무

복무  
기관

- 42. 공중보건의로로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과 공중보건장학생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28
- 43. 의무복무하게 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에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28
- 44. 의무복무 시작 시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28

# 목차

## 4. 의무복무

### 복무 기관

- 45. 의무복무하게 될 기관에 대한 정보(정원, 연봉, 직원 복지, 신입직원 교육 등)를 알 수 있을까요? ..... 29
- 46. 의무복부 기간 동안 보수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 29
- 47. 의무복무 할 기관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나요? ..... 29

### 복무 기간

- 48. 의무복무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30
- 49. 군의관 복무나 전문의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0
- 50. 의무복무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 31
- 51. 의무복무 시작 시기를 미루거나 잠시 중단할 수 없나요? ..... 31
- 52. 의무복무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31
- 53. 의무복무 기간이 곧 종료되는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 31

### 배치

- 54. 졸업 후 의무복무하게 될 기관으로 배치되는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2
- 55. 장학생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33
- 56. 의무복무 배치를 앞두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사도의 정규 배치 절차 진행 시점까지 합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33
- 57. 면허 취득 후 전문의 수련 없이 일반의로서도 의무복무가 가능한가요? ..... 33
- 58. 학교가 소재한 지역 내에 있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나요? ..... 33

**배치**

- 59. 의무복무 할 기관의 근무부서를 장학생이 희망하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 34
- 60. 의무복무 중 개인/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34
- 61. 오지나 도서산간지역 내 위치하는 곳으로 의무복무지가 배치될 수도 있나요? 34

**유예/  
철회**

- 62. 펠로우 수련으로 인한 의무복무 유예가 가능한가요? ..... 35
- 63. 임신으로 인한 의무복무 유예가 가능한가요? ..... 35
- 64. 의무복무 유예 사유가 발생했는데,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보고서'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 36
- 65. 군복무로 인해 의무복무 유예중인 장학생이 11월에 제대를 합니다. 사업 지침상 의무복무 유예 사유가 없어진 때 '즉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날 부터 바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 채용 및 신규직원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 시작일을 조정 할 수 있을까요? 36
- 66. 졸업예정자가 전문의 수련을 사유로 조건이행 유예 신청을 했는데 전공의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 했습니다. 유예가 유효한가요? ..... 36
- 67. 의무복무 기관에서 인턴 수련과 의무복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는 없나요? ... 37
- 68. 면허취득 후 부득이하게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장학금과 법정이자만 반납하면 되나요? ..... 37

## 5. 경력·취업

- 69. 의무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 38
- 70. 의무복무 기관에서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게 되나요? ..... 38
- 71. 의무복무 기간 중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 정원이 발생하면 지원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의무복무를 대체할  
수 있나요?..... 38
- 72. 의무복무 기간 동안 기간제로 채용되었는데, 복무기간 종료 후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39
- 73.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해당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면, 시험이나 면접 등  
채용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나요? ..... 39
- 74. 의무복무 기간 중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 39

## 6. 교육 및 멘토링

- 75. 공중보건장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 40
- 76.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졸업하여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중이신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 44
- 77. 멘토링은 교육과 어떻게 다른가요? ..... 44
- 78. 멘토링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 44
- 79.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되는 멘토는 누구인가요? ..... 44

80. 멘토링 진행 중 상대 멘토/멘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	45
81. 멘토링으로 매칭된 학생이 개인사정상 병원 방문이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비대면으로 멘토링을 진행해도 되나요? .....	45
82. 학기 중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서 출석 인정이 되나요? .....	45
83. 교육과 멘토링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나요? .....	45
84. 교육이나 멘토링 참석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가 지원되나요? .....	46
85. 교육이나 멘토링 당일이 아닌 하루 전일에 출발하는 교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	46
86. 교육 참여 시 식사나 숙소가 제공되나요? .....	46

## 7. 지역 구분

87. 장학금 지원 지역, 의무복무 지역 등 이 사업에서 말하는 ‘지역’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47
88. 장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기준 ‘복무희망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와 관련, 부산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소재 대학교를 나온 경우는 해당이 되는건가요? .....	47
89. 의무복무 희망지원 지역이 경상북도인데, 혹시 대구의료원으로도 배치될 수 있나요? .....	47

# 목차

## 8. 기타

- 90. 특례법에 명시된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의하나요? ..... 48
- 91.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별도의 증서가 수여되나요? ..... 48
- 92. 재학중 또는 의무복무 중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거나 겸업을 할 수  
있나요? ..... 48

## 부록

- 부록 1. 사업 주체별 역할 및 문의처 ..... 50
- 부록 2.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현황: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52



자주  
묻는  
질문

Q&A

# 1 장학생 신청



## 신청자격

### Q 1. 휴학생이나 졸업생도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대상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예과, 의학과)과 간호대학(간호학과, 전문대 포함) 재학생이며, 휴학생이나 졸업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Q 2. 현재 대학 4학년인데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중보건장학생 지원 시 학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4학년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졸업시까지 1학기 또는 2학기만 장학금을 지원 받더라도 의무복무 기간은 최소기간인 2년이 적용됩니다.

### Q 3. 장학생 신청에 나이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 Q 4. 재학 중 학교 사정으로 간호학과가 없어졌는데 제 학년까지는 정상적으로 간호학과 졸업 처리 및 면허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간호학과 졸업으로 인정이 되고 면허 취득도 가능하다면 장학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Q 5. 전적대학을 졸업/자퇴 후 현재 대학에 다시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성적증명서는 전적대학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등학교 성적을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재학중인 학교 기준으로 재학생/편입생/신입생을 구분하며, 전적대학교 졸업/자퇴 후 올 해 입학한 경우 '신입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 바랍니다.

**\* 성적증명서 제출 기준**

- 재학생 : 대학교 성적증명서
- 당해년도 편입생 :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
- 신입생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5쪽, <참고> 절차별 제출 서류

**Q 6. 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로 타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학위를 바탕으로 이번 학기에 편입했는데, 성적증명서는 학점은행제 성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졸업한 대학교 성적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이번 학기 편입생으로 입학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편입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와의 공정성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전공(의학 또는 간호학)이 아닌 이전 대학(다른 전공) 기준의 성적을 제출 바랍니다.

**Q 7. 장학생 신청 시 제출하는 성적증명서는 선발 이후 장학생 자격유지나 의무복무지 배치 등에도 반영이 되나요?**

장학생 신청 시 제출하는 성적증명서는 장학생 선발 시 학업능력 평가 근거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에는 매 학기 성적을 확인하여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충족 시 다음 학기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의장학을 위한 특례법」제5조(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제1항

**Q 8. 지원서에 기재하는 성적은 직전 한 학기 성적 평균만 기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균을 기재하는 건가요?**

직전 한 학기 성적의 평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 9. 자기소개서 작성 시 사진, 표 등을 삽입해도 되나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사진이나 표 등을 삽입하실 수 있으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글자수에 맞춰 해당 내용을 충분히 포함 해 주시길 바랍니다.

**Q 10. 신청서류 중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있어야 하나요?**

장학생 신청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의 생년월일까지만 표기되어도 무관하며, 장학생 선발 이후 장학금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입해야 합니다.

**Q 11. 신청서류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PDF가 아닌 한글 파일 형태로 제출하나요?**

도장이나 서명을 별도의 그림파일로 만들어서 한글파일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평가 과정의 편의를 위함임으로 부득이하게 PDF 파일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 12.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에 붙이는 증명사진의 별도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3cm X 4cm 규격의 반명함 사진으로 준비 해 주시길 바랍니다.

**Q 13. 학교가 소재한 지역으로만 지원 가능한가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학생이 졸업 후 의무복무하고 싶은 지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시도에서 신규 장학생을 모집하는지 선발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Q 14. '친구를 통해 이 제도를 알게되어 장학생 지원서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했는데, 학교에서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선발 계획, 공고 내용, 홍보물 등을 안내합니다. 혹시 공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 연락 주시면 관련 자료 송부 및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Q 15. 장학생 지원서 등의 제출서류를 시도와 보건복지부로 제출할 때 우편을 통해 제출하나요?**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니 장학생 신청 관련 서류 일체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바랍니다.

## 2 장학생 선발 및 취소



### 선발

#### Q 16. 지역별로 장학생을 모집하는 인원이 배정되어 있나요?

매 연말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별 신규 장학생 수요 및 재정상황 등에 따른 장학금 지원 가능 여부 조사 실시 후 다음 년도 최종 모집 정원을 결정합니다. 다만, 지원자 현황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최종 선발 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17.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간호대학생 선발 경쟁률을 알 수 있을까요?

지역별 경쟁률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전국 단위로 모집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지역별 수요에 따라 선발이 진행되고 있어 경쟁률은 지역별·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Q 18. 장학생 선발은 연 1회만 하나요?

정규 선발은 연 1회입니다. 단, 당해 연도 모집 및 선발 현황에 따라 하반기에 일부 정원에 대한 추가 선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19.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환산 하나요?

고등학교 3학년(1, 2학기) 주요 교과목(국어, 수학, 영어)의 석차등급/백분율/평어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합니다. 단,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각 시도별로 세부 산출기준을 일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산출기준에 따른 가이드 준수

**Q 20. 면접 복장은 정해져 있나요?**

면접 복장은 별도 정해진 바 없으며, 단정한 차림으로 참석 해 주시길 바랍니다.

**Q 21. 면접 참석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가 지원되나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하여 운임비(단, 철도, 선박, 항공, 버스에 한하며 자가용 승용차 이용은 제외함)를 지원하며, 결제 영수증 및 좌석표를 제출하시면 실비 지급 해 드립니다.

\* 지원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사항 확인 필요



**포기 및 취소**

**Q 2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중도 포기 할 수 있나요?**

본인의 개인사정 및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공중보건장학생 자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공중보건장학생(장학금)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장학생이 장학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별도의 장학금 반환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에 따라 장학생 선발 취소 처리되며,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동안 지원 받은 장학금과 법정 이자의 국고 반환 이후 장학생 선발이 취소됩니다.

다만, 면허 취득 이후 포기하는 경우라면 의무복무 이행 조건 불이행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 주관의 별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장학생 선발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고, 장학금과 법정 이자의 국고 반환 뿐 아니라 면허 취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3 장학금 교부 및 학사 관리



#### 장학금 지원 목적

#### Q 23. 장학금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원 받으면,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최소 2년~최대 5년) 의무적으로 공중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조건의 이행)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 의무복무

#### Q 24. 장학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장학금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 일체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성 학업장려금으로서, 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3조(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제2항



## 장학금 지급 시기/방법

### Q 25. 이미 이번 학기 학비를 납부한 상황인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은 다음 학기부터 받는건가요?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 된 학기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 일정이 학비 납부 기한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0쪽, 제5장 장학금 관리 - 1. 장학금 지급 시기 및 기간

### Q 26. 장학금은 졸업할 때 까지 지원 받나요?

선발된 학기부터 졸업할 때 까지 재학기간 동안 장학금이 지급되며 휴학, 정학, 유급, 졸업 연기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5조(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제2항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0쪽, 제5장 장학금 관리 - 1. 장학금 지급 시기 및 기간

### Q 27. 장학금 수혜 중에 장학금 신청 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장학금은 졸업할 때 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학금 수령 기간 변경을 원할 경우 '공중보건장학금 수혜기간 변경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도로 제출해야 하며, 사·도는 그 사유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합니다. 아울러, 장학금 수령 기간 변경(연장 또는 축소)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도 변경(연장 또는 축소)됩니다. 다만, 장학금 수령 기간을 4학기 미만으로 변경하더라도 최소 의무복무 기간은 2년입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0쪽, 제5장 장학금 관리 - 1. 장학금 지급 시기 및 기간

**Q 28. 장학금은 학교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되나요?**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도에서 장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38쪽, <별지 제6호 서식> 공중보건장학금 지급신청서

**Q 29. 학비 납부 기간이 되었는데 장학금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학비 납부 기간 이전에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장학금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구성되어 최종적으로 각 시·도에서 장학생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시·도의 예산 확보 시기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0쪽, 제5장 장학금 관리 - 1. 장학금 지급 시기 및 기간

**Q 30. 편입생이라서 현재 학적은 4학년이지만 실제 교과이수과정은 3학년이기 때문에 졸업까지 2년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남은 2년 동안 모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편입에 따른 부득이한 추가 학기 등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학년은 4학년, 희망지원기간은 4학기로 기재하시고 희망지원기간 하단에 참고사항으로서 '편입생 2학기 추가 등록 필요' 를 추가 기재 바랍니다.

**Q 31. 장학금을 1년만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의무복무도 1년만 하면 되나요?**

현행법상 의무복무 기간은 최소 2년~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1년만 지원 받더라도 의무복무 기간은 2년입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조건의 이행)제1항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5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1) 의무복무 기간

**Q 32. 학점 부족으로 인해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 더 등록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유예 및 해당 학기·학년 교육과정 재이수에 따른 유급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1쪽, 제5장 장학금 관리 - 2. 장학금 정지·중단·반환 - 1) 정지 및 중단

**Q 33.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장학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장학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일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복무 전제 장학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쪽, 제1장 사업개요 - 3. 사업 내용 - 중복지원

**Q 34. 장학금을 지원 받는 시도를 중도에 변경할 수 있나요?**

처음 신청한 시도에서 졸업할 때 까지 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 해당 지역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도간 지방비 예산 이관 및 장학생 인원 증감에 대해 상호 합의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장학금 정지·중단·반환



### 잠깐! 관련 법률을 먼저 살펴볼까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 ①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정학처분을 받아 학업을 일시 정지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
  2. 퇴학 또는 제적
  3.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
  4.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기간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6.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소속 대학장이 인정한 경우
  7.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

- ①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받아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조건 이행 기간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건 이행이 면제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정하여진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중단이나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국가시험 불합격 또는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면허취소가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장학금을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Q 35. 장학금 수혜 중 휴학을 해도 장학금이 계속 지급 되나요?**

휴학, 정학, 유급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의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제1항  
「2026년 공중보건의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1쪽, 제5장 장학금 관리 - 2. 장학금 정지·중단·반환 - 1) 정지 및 중단

**Q 36. 재학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장학금이 계속 지급 되나요?**

교환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인정되고 졸업이 연기되지 않는다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기중에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37. 장학금을 받는 중에 전과를 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해도 장학금 수혜가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전과는 면허 취득 및 의무복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기존에 지원 받은 장학금과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로 반환해야 합니다. 동일한 전공으로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의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7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제2항제3호  
「2026년 공중보건의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1쪽, 제5장 장학금 관리 - 2. 장학금 정지·중단·반환 - 1) 정지 및 중단

### Q 38. 졸업 후 면허 시험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로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지급된 장학금의 국고 반환)제1항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21쪽, 제5장 장학금 관리 - 2. 장학금 정지·중단·반환 - 2) 반환

### Q 39.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더해지는 법정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연 5%를 적용합니다.

**관련 근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학적·성적 관리

### Q 40.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휴학/복학/전과/편입 등 학적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통보해야 하나요?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도에서는 매 학기 종료 후 장학생의 다음 학기의 학적을 조사하여 '학사관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하며(장학금 지급 기간이 종료된 장학생의 경우에도 졸업 전까지 학사관리 보고서 제출 필요), 조사 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등을 결정하여 운영합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0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1. 학사 관리

### Q 41. 학사관리 보고서에 신설된 성적 기준은 기존 장학생에게도 모두 적용되나요?

2025년부터 '학사관리 보고서'에 직전 학기 성적 충족 여부를 포함함으로써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충족 시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장학생이 향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로서 역할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업 성취를 이루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며, 2025년부터 선발되는 장학생 뿐 아니라 이전에 선발된 모든 장학생에게 일괄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 장학생의 경우에는 선발 과정에서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선발된 첫 학기 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 충족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음 학기부터 성적 기준 충족 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0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1. 학사 관리

## 4 의무복무



### 복무 기관

#### Q 42. 공중보건의로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과 공중보건장학생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군대에 가는 대신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공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과대학생과 의전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공중보건장학생제도입니다.

#### Q 43. 의무복무하게 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공립노인·요양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관련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4항

#### Q 44. 의무복무 시작 시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의무복무 기관에서는 배치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확인 사항 등을 검토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기관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을 통해 별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45. 의무복무하게 될 기관에 대한 정보(정원, 연봉, 직원 복지, 신입직원 교육 등)를 알 수 있을까요?**

의무복무 기관에 대한 정보는 사전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기관을 통해 별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방의료원 통합공시를 통해서도 정원, 평균보수 등 일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홈페이지 [rhs.mohw.go.kr](https://rhs.mohw.go.kr)

**Q 46. 의무복무 기간 동안 보수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의무복무 기간 동안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보수 기준에 따르며, 다른 신규 직원과 보수 지급 체계를 동등하게 적용받습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6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2) 근무상황 관리 및 평가

**Q 47. 의무복무 할 기관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나요?**

해당 기관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용 인원 제한 등의 사유로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 복무 기간

### Q 48. 의무복무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실시하며, 범위는 최소 2년~최대 5년입니다.

지원 학기	1~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8학기	9학기	10~12학기
의무복무 기간	2년	2.5년	3년	3.5년	4년	4.5년	5년

####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6조(조건의 이행)제1항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5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1) 의무복무 기간

### Q 49. 군의관 복무나 전문의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군의관, 공중보건조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복무는 공중보건장학생의 의무복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생이 의무복무 지역 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는 수련 기간의 4분의 1을 의무복무 이행 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실제 의무복무 근무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 자가 지방의료원에서 4년 동안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 4년의 4분의 1인 1년을 의무복무 이행 기간에 포함하여 실제 의무복무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2년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

####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3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1) 의무복무 기간

### Q 50. 의무복무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의무복무는 면허 취득 후 바로 시작하고 중단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규 배치의 경우 보통 1월에 의무복무 배치 결과가 통보되고 3월부터 의무복무 기관에서 근무를 실시합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3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1. 의무복무 배치

### Q 51. 의무복무 시작 시기를 미루거나 잠시 중단할 수 없나요?

의무복무는 면허 취득 즉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수련, 세부전공(펠로우) 수련, 본인 출산 등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의무복무 시작 시기를 유예하거나, 의무복무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조건의 이행)제2항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8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3. 의무복무 유예

### Q 52. 의무복무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의무복무자는 근무기간이 6개월 초과하였을 때 근무 기관과의 협의 하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질병휴직과 출산휴가 신청시에도 해당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Q 53. 의무복무 기간이 곧 종료되는데,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의무복무 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별도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 의무복무 기간 종료 예정자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계속 채용 여부, 채용 시 형태, 미채용 시 사유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배치

### Q 54. 졸업 후 의무복무하게 될 기관으로 배치되는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무복무 기관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필요 인력 수요조사 및 장학생(배치될 인력)의 선호 기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필요 인력 수요가 없거나 적을 경우, 장학생이 희망하는 기관과 다른 곳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정규 배치의 경우 보통 1월에 의무복무 배치 결과가 통보되고 3월부터 의무복무 기관에서 근무를 실시합니다.

구분	내용	시기	비고
시도 인력배치 계획 제출 요청	다음 해 의무복무 대상자 명단을 시도로 통보하고, 관련 수요조사 및 결과 제출 요청	11월	복지부 → 시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인력 수요 조사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배치 수요 조사* 하고, 해당 수요를 배치 대상 장학생에게 안내 * 필요 인원, 배치 시 업무, 근무일, 급여 등 조사	11월	시도 → 의료기관
의무복무 대상자 선호 기관 조사	장학생은 안내된 의료기관 수요를 참고하여 의무복무 선호 기관 우선 순위를 제출함	11월	시도 → 의무복무 대상자
조사 결과 검토 및 배치 결정	인력 배치 수요 조사 및 선호 기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배치 기관 결정 * 필요 시 전문가 자문 의견 청취, 면접 또는 멘토링 결과보고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적 등 참고하여 의료기관과 논의	11월 ~12월	시도
배치 결과 통보	배치 결과를 의료기관 및 의무복무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1주 이내에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문으로 통보	12월 ~1월	시도 → 의무복무 대상자, 보건복지부, NMC
최종합격자 확인사항 검토 및 채용	의료기관은 배치된 의무복무자 대상으로 기관 규정에 준하는 최종합격자 확인 사항*을 검토 후 결격 사유 없을 시 채용 (근로계약) 진행 * 채용 신체검사서, 성범죄 전력,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전력 등	1월 ~2월	의료기관 → 의무복무 대상자
채용 결과 통보	채용 완료 후 1주 이내에 '공중보건장학생 채용 결과 보고서'를 시도로 제출	2월 ~3월	의료기관 → 시도
	의료기관이 제출한 채용 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문으로 제출	2월 ~3월	시도 → 보건복지부, NMC
의무복무 실시	의료기관에서 배정한 부서에서 근무 실시 및 근무 평가	의무복무 기간	의무복무자, 의료기관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3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1. 의무복무 배치

**Q 55. 장학생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무복무 예정인 장학생이 시·도의 정규 배치 절차 이전에 지역 내 공공보건의로 수행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 제외)의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개별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의무복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 사정에 따라 의무복무 인정 기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시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치 절차 및 결과에 따라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공공보건의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공공보건의로 수행기관’ 중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3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1. 의무복무 배치

**Q 56. 의무복무 배치를 앞두고 지역 내 공공보건의로 수행기관의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시·도의 정규 배치 절차 진행 시점까지 합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시·도의 정규 배치 절차에 따른 배치 결과 통보 시점 까지 개별 취업의 최종 합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시·도는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배치 절차에 따라 장학생을 배치합니다. 다만, 배치 통보 이후 개별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역 수급 상황 및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배치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3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1. 의무복무 배치

**Q 57. 면허 취득 후 전문의 수련 없이 일반의로서도 의무복무가 가능한가요?**

일반의로서도 의무복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당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수요가 없을 시에는 일정기간 의무복무 배치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배치가 연기되는 경우, 56번 답변 내용과 같이 장학생이 시·도와의 사전 협의 이후 공공의료기관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개별 취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58. 학교가 소재한 지역 내에 있는 공공보건의로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나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장학생 신청 시 기재한 '희망지원지역' 내 공공보건의로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 Q 59. 의무복무 할 기관의 근무부서를 장학생이 희망하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장학생이 의무복무 할 기관의 근무부서에 대해 사전 논의가 가능하나, 이는 해당 의무복무 기관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이에, 의대생·의전원생의 경우 시도 및 의무복무 기관 상황에 따라 부득이 본인의 전문의 자격과 다른 진료과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40쪽, <별지 6-2호 서식> 공중보건장학생 서약서

### Q 60. 의무복무 중 개인/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처음 배치된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지역(시·도) 내에서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과 기관 간 협의 이후 시·도에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시·도는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 변경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퇴사 후 기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기관 변경 대상이 아닌 의무복무 불이행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생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의3(근무 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5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1. 의무복무 배치 - 1) 의무복무 기관

### Q 61. 오지나 도서산간지역 내 위치하는 곳으로 의무복무지가 배치될 수도 있나요?

의무복무 희망 지역으로 신청한 시·도 내에서 배치 시점 당시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필요한 기관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해당 시도 내 오지나 도서산간에 위치한 기관으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면허조건이행기간)제2항

 **유예/철회**



**잠깐! 관련 법률을 먼저 살펴볼까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조건의 이행)**

-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조건 이행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助産)의 수습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Q 62. 펠로우 수련으로 인한 의무복무 유예가 가능한가요?**

2025년부터 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와 펠로우 수련 모두를 의무복무 유예 사유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8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3. 의무복무 유예

**Q 63. 임신으로 인한 의무복무 유예가 가능한가요?**

2025년부터 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본인 임신 및 출산을 의무복무 유예 사유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8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3. 의무복무 유예

**Q 64. 의무복무 유예 사유가 발생했는데,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보고서'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장학생은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 즉시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보고해야 하고, 해당 보고서는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1월마다 새로 작성·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공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8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3. 의무복무 유예

**Q 65. 군복무로 인해 의무복무 유예중인 장학생이 11월에 제대를 합니다. 사업 지침상 의무복무 유예 사유가 없어진 때 '즉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날 부터 바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 채용 및 신규직원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 시작일을 조정 할 수 있을까요?**

의무복무 유예 사유 해소에 따라 근무를 시작할 때에는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에 따른 부득이한 공백 기간은 인정됩니다. 단, 공백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66. 졸업예정자가 전문의 수련을 사유로 조건이행 유예 신청을 했는데 전공의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 했습니다. 유예가 유효한가요?**

전공의 임용 시험에 불합격 한 경우 조건이행 유예 신청은 기각되며, 즉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학생은 '조건이행 유예사유 발생보고서'를 제출한 시·도에 전공의 임용 시험 불합격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시·도는 보건복지부에 '조건이행 유예사유 해소보고서' 제출 등 장학생이 즉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Q 67. 의무복무 기관에서 인턴 수련과 의무복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는 없나요?**

의무복무와 전문의 수련 과정을 동시 이행할 수 없으며, 의무복무 유예 신청 후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장학생이 의무복무 지역 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는 수련 기간의 4분의 1을 의무복무 이행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무복무기간이 축소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실제 의무복무 근무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

**Q 68. 면허취득 후 부득이하게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장학금과 법정이자만 반납하면 되나요?**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할 뿐 아니라 면허 취소가 검토될 수 있으며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제10조(행정처분)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3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2) 근무상황 관리 및 평가

## 5 경력 · 취업

### Q 69. 의무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의무복무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경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6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2) 근무상황 관리 및 평가

### Q 70. 의무복무 기관에서 정규직으로서 근무하게 되나요?

고용형태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무복무 기간 동안 정규직에 준하는 정원 외 별정직으로 근무하나, 정규직 채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복무 기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6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2) 근무상황 관리 및 평가

### Q 71. 의무복무 기간 중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 정원이 발생하면 지원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의무복무를 대체할 수 있나요?

의무복무 기간 중 해당 기관의 정규직 채용 공고에 지원 가능하며, 합격하면 정규직으로서 남은 기간의 의무복무를 이행 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3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1) 의무복무 기관

**Q 72. 의무복무 기간 동안 기간제로 채용되었는데, 복무기간 종료 후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장학생과 배치기관 모두 지속 근무를 원한다면, 장학생과 기관 간 상호 협의 하에 별도의 신규(경력직)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6쪽, 제4장 의무복무 관리 - 2. 의무복무 실시 - 2) 근무상황 관리 및 평가

**Q 73.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배치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면, 시험이나 면접 등 채용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나요?**

해당 기관의 방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Q 74. 의무복무 기간 중 다른 공공보건의로 수행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해당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의무복무 지역 내 다른 공공보건의로 수행기관으로의 취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시도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6 교육 및 멘토링

### Q 75. 공중보건장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공중보건장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현장탐방,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학습관리시스템(www.edunmc.or.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프로그램 대상, 일정 등 세부 내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사항 확인 필요

#### ■ 교육

- 집합 교육과정

대상	프로그램명	일정	세부 내용
재학생 (신규)	공공보건의료 입문 교육	7~8월 (1박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보건장학제도 이해</li> <li>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역사</li> <li>공공보건의료 현재와 미래</li> <li>신규 장학생 팀빌딩</li> <li>선배와의 만남</li> </ul>
재학생 (입문 수료자)	공공보건의료 심화 교육	7~8월 (1박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의료 분야 탐색</li> <li>공공보건의료 이슈 토론</li> <li>진로탐색 워크숍 및 코칭</li> <li>공중보건장학제도 개선 논의</li> </ul>
	현장탐방	8~9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 역할과 기능 이해</li> <li>현장 업무 특성 체험</li> <li>공공보건의료 종사자 간담회</li> </ul>
의무복무 예정자	멘토링/간담회	6~8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 이해</li> <li>맞춤형 심층 상담</li> <li>근무 관련 준비사항 인지</li> </ul>
의무 복무자	동문 네트워크	11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 활동 사례 보고</li> <li>사명감 재인식 및 비전 탐색</li> <li>정보 교류 및 상호 지원체계 구축</li> </ul>

- 이리닝 과정(2026년 1월 기준)

● 이리닝, ▲ 유튜브러닝, ■ 실감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과정명	차시
공공보건의로	기본교육	정책 및 방향	● 2020 한국 공공보건의로 이해 I	4
			● 2020 한국 공공보건의로 이해 II	3
			● 2024 공공보건의로 정책(2024)	3
			● 2024 공공의로 종사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의료윤리와 공공성	3
			● 2025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로 현실과 과제	3
			● 2022 제2차 공공보건의로 기본계획	4
		법과 제도	● 2023 공공의료기관 의료 관련법	3
			● 2022 의료기관이 알아야할 중대재해처벌법	3
		국내외 사례	● 2024 해외 보건의로 체계와 정책 사례: 국가 연합편(2024)	3
			● 2024 해외 보건의로 체계와 정책 사례: 주요 국가편(2024)	5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	▲ 2021 [공공의료 인물탐방] 공공의료 40년 박찬병 원장편	1	
		▲ 2021 [공공의료 현장이야기] 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편	1	
		▲ 2022 [공공의료 현장이야기] ② 영주직십자병원편	1	
		▲ 2022 [공공의료 현장이야기] ③ 국립공주병원편	1	
		▲ 2023 [공공의료 현장이야기] ④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편	1	
		▲ 2024 [공공의료 현장이야기] ⑤ 충청남도 홍성의료원편	1	
		▲ 2025 [공공의료 현장이야기] ⑥ 경상북도 포항의료원편	1	
		▲ 2021 공공보건의로인력 양성의 주축, 공공보건의로교육훈련센터	1	
		▲ 2025 공공보건의로 인재양성의 중심기관, 공공보건의로교육훈련센터	1	
		● 2024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다: 지역의료 활성화 전략	4	
공공의료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 2024 공공의료 현장 속으로: 공공의료 종사자에게 묻다(의사편)	1		
	● 2025 공공의료 현장 속으로: 공공의료 종사자에게 묻다(간호사편)	1		
	● 2020 재난대응의 이해와 중증도 분류	2		
전문입상	응급/외상/재난	● 2023 응급의료 체계의 이해(2023)	3	
		● 2020 응급 상황에서의 기도관리	4	
		● 2021 대동맥 내 풍선폐쇄 소생술(REBOA)	5	
		● 2025 외상환자 치료의 이해	3	

- 이러닝 과정(2026년 1월 기준)

● 이러닝, ▲ 유튜브버닝, ■ 실감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과정명	차시
전문 임상	심뇌혈관		● 2025 뇌혈관 질환 검사 및 치료 한 눈에 알아보기	4
			● 2025 소아 중환자 치료의 이해	5
	중환자		● 2025 중환자 치료의 이해(CRRT)	5
			● 2023 지역사회 노인환자 관리를 위한 노인병학	4
	노인성질환		● 2021 골다공증 이럴 때 어떻게?	5
			● 2022 간호사직 의료임상교육 기본간호술기 온라인교육	3
	임상술기		● 2022 정형외과 수술 전후의 관리: ERAS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5
			● 2023 임상술기 I - 의료진을 위한 케모포트 바늘 삽입/제거	1
			● 2023 임상술기 II - 의료진을 위한 Levin-Tube 삽입방법	1
			● 2024 고유량 산소요법의 이해	3
			● 2024 의료인으로서의 첫 걸음: 심전도의 이해	3
			■ 2024 인공호흡기(Ventilator) 시뮬레이션	-
			● 2024 의료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마약류 중독 관리	2
	약물		■ 2025 의료진 대상 마약류 환자 진료 및 치료 시뮬레이션	-
			● 2024 욕창 예방 및 관리(기본)	3
	욕창 및 장루		■ 2024 욕창 ZERO 미션 도전 : 욕창 관리 시뮬레이션 훈련	-
			● 2024 공공의료 출발점 모자의료	1
	신생아/산모		● 2024 공공의료 종사자를 위한 고위험 산모 A to Z	4
			● 2025 개인보호구 Level C 착탈의	2
	감염		● 2021 감염관리 - 병원출입자	1
			● 2021 감염관리 - 환경관련 업무종사자	1
			● 2021 감염관리 - 외래출입 및 편의시설 종사자	1
			● 2021 감염관리 - 청결구역종사자	1
			● 2023 병원 감염 예방·관리 기본 과정	4
● 2024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바로 알기			3	
● 2024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바로 알기			3	
■ 2023 R(가상현실) 개인보호복 착탈의 시뮬레이션			-	
● 2025 언젠가는 슬기로울 항생제 사용			4	

● 이러닝, ▲ 유튜브러닝, ■ 실감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과정명	차시
직무 공통	공통역량		● 2025 열정이 탈진으로 번지기 전에: 공공의료 종사자를 위한 번아웃 Talk	3
	의사소통		● 2020 효과적인 공공병원 의료커뮤니케이션	3
			● 2022 팬데믹 시대의 위기관리 소통	3
직문 전문	경영관리	인사	● 2021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수업설계 전략	2
			● 2024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 트렌드	3
	사업관리	기획력	● 2024 공중보건의료계획서 작성의 실제	3
		돌봄	● 2022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사례와 발전방향	3
		재택의료	● 2023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재택의료시범사업	4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 2024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이해: 지방의료에 명망이 간다	1
		공중보건 장학사업		● 2022 공중보건장학간호사의 지역사회보건관리
			● 2025 공중보건의료 첫 걸음: 공중보건장학생 선배에게 묻다(의사편)	3
			▲ 2024 공중보건장학생이 되고 싶다면?	1
	원무/보험	CS	● 2023 헬스케어 의료서비스 디자인	3
	재무/회계	재무	● 2024 비용을 넘어 가치로: 병원 원가 관리의 전략적 접근	3
	IT	통계	● 2021 병원 통계분석 역량 강화 입문	5
	환자관리	환자안전		● 2022 [기본] PDCA를 활용한 QI활동방법론과 활동도구 I
			● 2022 [기본] PDCA를 활용한 QI활동방법론과 활동도구 II	2
			● 2021 [심화] 환자안전과 환자안전방법론	3
			● 2023 환자안전의 이해	4
			● 2025 효과적인 환자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전략: 환자안전사고 소통하기	3
지표관리			● 2025 의료기관 지표관리 실무 기본(2025)	4
			● 2025 공공의료 표준진료지침(CP)의 모든 것	3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1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Q 76.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졸업하여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 중이신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교육이나 현장탐방, 멘토링/간담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직에 계시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며, 공중보건장학생 출신의 의료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77. 멘토링은 교육과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은 모든 학년의 장학생들이 일정 장소에 집합하여 공통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면, 멘토링은 의무복무를 앞둔 장학생이 향후 근무 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의료진과 소수 정예로 매칭되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별 상담 등 기관별 자체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본인이 근무 할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소명 의식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78. 멘토링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먼저, 장학생을 대상으로 의무복무 예정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멘토링 기관을 조사합니다. 이 중 멘토링 수행 경험이 있고 의무복무자가 배치된 기관을 우선순위로 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다만, 장학생이 희망하는 기관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임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79.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되는 멘토는 누구인가요?**

주로 진료/간호부서장 등의 보직자 및 교육 전담 인력이 멘토로 지정되며, 멘토링 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의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전문가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80. 멘토링 진행 중 상대 멘토/멘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멘토링 진행 중 상대 멘토/멘티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81. 멘토링으로 매칭된 학생이 개인사정상 병원 방문이 어렵다고 합니다. 혹시 비대면으로 멘토링을 진행해도 되나요?**

대면 방식을 권장하지만, 학생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멘토링 활동내역서 작성 시 해당 특이사항을 기재 해 주시길 바랍니다.

**Q 82. 학기 중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 학교에서 출석 인정이 되나요?**

공중보건장학생 멘토링 참여는 학교 출석 인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멘토링 일정에 대해 멘토-멘티 간 사전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Q 83. 교육과 멘토링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나요?**

장학생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서 개최하는 교육 및 멘토링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 이수 실적이 별도 관리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불참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패널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1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Q 84. 교육이나 멘토링 참석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가 지원되나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운임비(단, 철도, 선박, 항공, 버스에 한하며 자가용 승용차 이용은 제외함)를 지원하며, 결제 영수증 및 좌석표를 제출하시면 실비 지급 해 드립니다.

\* 지원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사항 확인 필요

**관련 근거** 「2026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침」 12쪽, 제3장 장학생 관리 - 2.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Q 85. 교육이나 멘토링 당일이 아닌 하루 전일에 출발하는 교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하루 전일에 출발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일자에 대한 운임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Q 86. 교육 참여 시 식사나 숙소가 제공되나요?**

교육 프로그램 중 식사 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참석자에게 중식 1끼를 제공하며, 교육 일정이 1박 이상인 경우에는 숙소(2인 1실)를 제공합니다.

\* 제공 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안내사항 확인 필요

## 7 지역 구분

**Q 87. 장학금 지원 지역, 의무복무 지역 등 이 사업에서 말하는 '지역'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기준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본 사업에서 말하는 '지역'의 기준입니다.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Q 88. 장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기준 '복무희망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와 관련, 부산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남도 소재 대학교를 나온 경우는 해당되나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서로 다른 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가산점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Q 89. 의무복무 희망지원 지역이 경상북도인데, 혹시 대구의료원으로도 배치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서로 다른 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희망 근무지를 경상북도로 지원한 경우, 대구의료원으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 8 기타

### Q 90. 특례법에 명시된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의하나요?

「민법」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로 정의합니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이들까지 포함됨).

**관련 근거**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Q 91.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별도의 증서가 수여되나요?

신규 장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증서는 증빙의 용도가 아닌 상징적 의미로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 사항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92. 재학 중 또는 의무복무 중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거나 겸업을 할 수 있나요?

재학 중 개인사업자 등록 및 겸업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면허 취득 후 의무복무 이행 중인 경우에는 의료법 및 의무복무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겸업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록

부록 1. 사업 주체별 역할 및 문의처

부록 2.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현황: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부록 1. 사업 주체별 역할 및 문의처

## 사업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구성원	
중앙부처		- 사업 기획, 추진일정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보건복지부	
사·도		- 의무복무 대상 의료기관의 인력 수요 파악 - 각 대학의 추천 학생들에 대한 선발 우선순위 부여, 보건복지부 추천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학사 관리, 의무복무 의료기관 배치 후 인력관리 등	전국 17개 시·도	
사무국		- 보건복지부 업무 지원, 장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위원회 운영 등 위탁 수행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위원회	선발평가위원회	- 선발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각 대학 및 시·도에서 추천한 학생들에 대한 서류 및 면접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교수, 간호대학 교수, 지방의료원 의료진,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공중보건장학생 관리 심의위원회	- 자격 취소 및 반환, 의무복무 유예 등 장학생 관리·운영관련 기준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제시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전문가, 장학사업·법률 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전문가 자문 위원회 (필요 시)	교육	- 제도 운영 전반과 연간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 멘토링 체계 운영을 통한 장학생 지도 내용 공유 - 교육 프로그램(안)에 대한 자문	보건복지부, 각 그룹별 멘토,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배치	- 시·도의 의무복무 대상 의료기관 수요와 배치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	보건복지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제도 개선	- 시범사업 추진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에 대한 의견 제시	보건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장, 지역보건전문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	

문의처

(2026년 3월 기준)

	기관	담당과	전화
중앙 부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4
사무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02-6362-3741
사업 참여 시·도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1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54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052-229-3524
	대전광역시	의료정책과	042-370-4041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34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041-635-2645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033-249-2394
	경기도	의료자원과	031-8008-4768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063-280-2455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061-286-6021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4-880-3785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055-211-505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064-710-2915

※ 상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선으로 확인 권장

## 부록 2.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현황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출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홈페이지(2026년 3월 기준)

사군구명	번호	기관명	수련병원 지정	
			인턴	레지던트
서울	1	서울대학교병원	○	○
	2	서울의료원	○	○
	3	서울적십자병원	○	○
부산	4	부산대학교병원	○	○
	5	부산의료원	○	○
대구	6	경북대학교병원	○	○
	7	철곡경북대학교병원	○	○
	8	대구의료원	○	○(가정)
인천	9	인천광역시의료원	○	○(가정)
	10	인천적십자병원	-	-
광주	11	전남대학교병원	○	○
	12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	-
세종	13	세종충남대학교병원	○	○
대전	14	충남대학교병원	○	○
경기	1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16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
	17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
	18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
	19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
	20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
	2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
	22	성남시의료원	○	○(가정)
강원	23	강원대학교병원	○	○
	24	원주의료원	○	-
	25	강릉의료원	-	-
	26	속초의료원	○	-
	27	삼척의료원	○	-
	28	영월의료원	-	-

시군구명	번호	기관명	수련병원 지정	
			인턴	레지던트
충북	29	충북대학교병원	○	○
	30	청주의료원	○	-
	31	충주의료원	○	-
충남	32	천안의료원	-	-
	33	공주의료원	○	-
	34	서산의료원	○	-
	35	홍성의료원	○	○(가정)
전북	36	전북대학교병원	○	○
	37	군산의료원	○	○(가정)
	38	남원의료원	○	○(가정)
	39	진안군의료원	-	-
전남	4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
	41	목포시의료원	-	-
	42	순천의료원	-	-
	43	강진의료원	-	-
경북	44	포항의료원	○	-
	45	김천의료원	○	-
	46	안동의료원	-	-
	47	울진군의료원	-	-
	48	상주적십자병원	○	-
	49	영주적십자병원	-	-
경남	50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
	51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
	52	양상부산대학교병원	○	○
	53	마산의료원	○	-
	54	통영적십자병원	-	-
	55	거창적십자병원	-	-
제주	56	제주대학교병원	○	○
	57	제주의료원	-	-
	58	서귀포의료원	○	-
계			40	25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 자주 묻는 질문(FAQ)

---

**제작부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 [www.edunmc.or.kr](http://www.edunmc.or.kr)

---